

WTO 統一原產地規定的 體系化 過程

李 春 三*

- I. 序 論
- II. 國際貿易과 原產地規定
 - 1. 원산지규정의 의의
 - 2. 원산지규정과 무역관련제도
- III. 原產地規定에 대한 國際的論議
 - 1. GATT에서의 원산지규정
 - 2. UNCTAD에서의 원산지 규정
 - 3. KYOTO(京都)협약
 - 4.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배경
- IV. WTO의 原產地規定
 - 1. 구 成
 - 2. 협정의 주요내용
 - 3. 統一原產地規定的 제정에 관한 협상
- V. 結 論

I. 序 論

WTO 설립의 목적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 淸州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여 상호 호혜적인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¹⁾

그러나 WTO의 이러한 목적하에서도 세계경제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1994), EU(유럽연합, 1993), MERCOSUR(남미공동시장, 199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1989),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 등 지역주의(Regionalism)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통상환경의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제블록의 목적은 체결국간의 저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상호 향유하고 체결국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므로 이같은 상호간의 혜택을 제3국이 부당하게 향유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²⁾ 더욱이 자유무역지역의 원산지규정은 지역통합의 발전과 역내산업보호를 위해 지역내 원산지 판정요건으로서 높은 역내 부가가치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산품의 역내시장 접근을 곤란하게 했다. 결국 지역주의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역내간 상호간의 특혜는 자연히 역내외 국가간의 차별 내지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 그 자체는 국경간을 이동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품의 원산지(the country of origin) 판정을 위한 수요증대를 가져 오고 있다.³⁾

또한 생산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현상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세계화란 개별기업이 각국의 비교우위를 동시에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능력의 발전을 토대로 각 기업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제각기 다른 비교우위를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1) MA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前文.

2) Gary Clyde Hufbauer and Jeffrey J Schott, North American Free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p.155.

3) 한홍렬,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 pp7-9.

써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조류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할 것이며, 기존의 무역이론이 제시하던 국가별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통적인 무역패턴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 성격이 강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그러므로 생산의 세계화⁵⁾로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많은 제품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다수 포함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특정제품의 원산지의 판별에 관한 것이다. 즉 여러 국가에서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세관을 통과할 때 또는 시장에서 유통된 후에 각종 무역제도 및 조치의 적용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지의 판정문제가 관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차원의 무역협상 및 논의 전개는 전통적 무역의 개념 및 무역관련 조치의 범주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다. 즉,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도입,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 등 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주의는 역내국가간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역내간 시장개방의 정도를 심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며, 지역간 협정이 단순히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벗어나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활동의 보장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국간에 걸쳐 진행되는 생산활동의 전세계화 등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판정의 수요가 특정상품뿐 아니라 모

4) 韓弘烈,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5, pp.8~11.

5) 세계화된 기업들의 해외투자동기를 보면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확보가 가장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각국의 보호장벽강화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2국간 또는 수개국의 기업들이 戰略的提携(Strategic Alliance)를 활용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이다. 產業研究院, 21世紀 世界市場經營戰略-KIET 研究報告書, 1994. 3, p.22

戰略的提携 形態는 대체로 ① 技術提携(기술교환 및 농농기술개발), ② 調達提携(물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③ 生産提携(생산비용 및 시장지위의 확보), ④ 販賣提携(상대국시장집근 및 판매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洪裕株, 戰略的提携와 新技術革新의 國際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p.26~29

등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일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규범⁶⁾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마다 원산지규정이 제각기 틀릴 뿐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UR협상 결과에서도 상품무역협정의 대부분은 비교적 합의 도출되었지만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은 WTO체제 출범 후 3년간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을 뿐 실질적인 면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⁷⁾

이는 국제통상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인 면에서 원산지규정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II. 국제무역과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the Country of Origin)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및 행정적 절차를 일컫는다.⁸⁾ 즉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통관과정 등에서 일정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원산지규정은 정의상 그 자체가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진 무

6) GATT, 제9조 : Marks of origin 규정이 있으나, 이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아니라 단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다. 이외에 Tokyo 협약, UNCTAD의 원산지규정이 있으나 국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본논문 III부 참조).

7)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IX. 2 ·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Work Program.

8)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 1.1. Terence P. Stewart, The GATT Uruguay Round :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 1,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p.715.

역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식별을 통하여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는데, 이때 원산지로 판정받기 위한 조건이 엄격하게 설치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⁹⁾

또한 최근의 무역증가는 생산과 정책적 특수원산지규정을 개발했으며 이로써 과거 수년간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사용해오던 다양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원산지 규정이 존재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규정이 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될 때 강력한 경제적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¹⁰⁾

특히, UR협상의 타결로 종래의 명시적인 관세, 비관세장벽으로는 적실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2차적 무역장벽(Secondary Trade Barrier)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국제조약에 의한 관세편익제공, 즉 특정국가가 생산·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제조약이 정한 일정한 관세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상품의 원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GSP, 자유무역협정 등), 둘째, 산업정책상의 필요성 충족, 즉 반덤핑 및 수입쿼터 관련 우회수출방지, 품목별 특별원산지규정¹³⁾을 통한 산업보호, 역내 부품사용 촉진 등이며, 셋째, 소비자보호 및 병충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를 위함이다.

원산지규정은 본래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중립적인 제도이지만 각국이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보호주의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원산지규정의 운용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¹⁴⁾

9) 한홍렬,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3, p.11.

10) E. Ivan Kingston,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7.

11) 한홍렬, NAFTA의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8.

12) 協同文庫, 原產地規程 및 適用事例, 1993. 1, p.16.

13) 원산지규정의 분류에서 성격상 일반(general)규정과 특별(specific)규정이 있으며, 전자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규정이고, 후자는 제품(군)별로 원산지 결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 協同文庫, 前掲書, p.16.

14) 日本, 通商産業省, 「不公正貿易報告書, 1994年版」, 1994. 3, p.181.

첫째, 특정무역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개정 및 운용, 둘째,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결여 및 통일성 없는 운용, 셋째,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의 채택, 넷째, 무역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원산지 표시의 요구, 다섯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역외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특혜원산지규정의 제정 및 운용 등이다.

향후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산지 판별의 남용도 유발될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무역시정, 자국산업보호, 특혜부여(개도국, MFN대우, 관세동맹에 대한), 자국상품구매정책, 상호시장 개방 측정도구, 정치적 제재확대 등과 같은 원산지 판별이 요구되는 차별적 무역수단의 제 형태들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게 될 것이다.¹⁵⁾

2. 원산지규정과 무역관련제도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구성

특정국가가 상품의 원산지(the Country of Origin)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본질상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 국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품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은 특정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confer)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¹⁶⁾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¹⁷⁾은 첫째, 세번(稅番)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둘째,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셋째, 주

15) Ibid., p.10

16) 예를 들어 PC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CPU는 Intel사의 Chip을 사용하고 Mother Board는 싱가포르, 기타 반도체는 일본산, 모니터는 한국산, Key board와 Case는 대만산, FDD HDD는 일본산 등을 사용하여 한국 IBM사가 최종 생산하였을 경우 과연 이 PC는 어느나라 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산지기준을 세정 사용할 수밖에 없다

17) Terence P Stewart, Ibid, pp.717-718.

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들 수 있다.

세번(稅番)변경기준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稅番, HS : Harmonized System¹⁸⁾기준)과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생산의 특정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당해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주요공정기준은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주요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원산지 확인절차는 각종 원산지 관련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입국의 통관부처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조치를 통해 원산지의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같은 특혜무역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¹⁹⁾

또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의 경유나 보세(保稅)지역의 통과과정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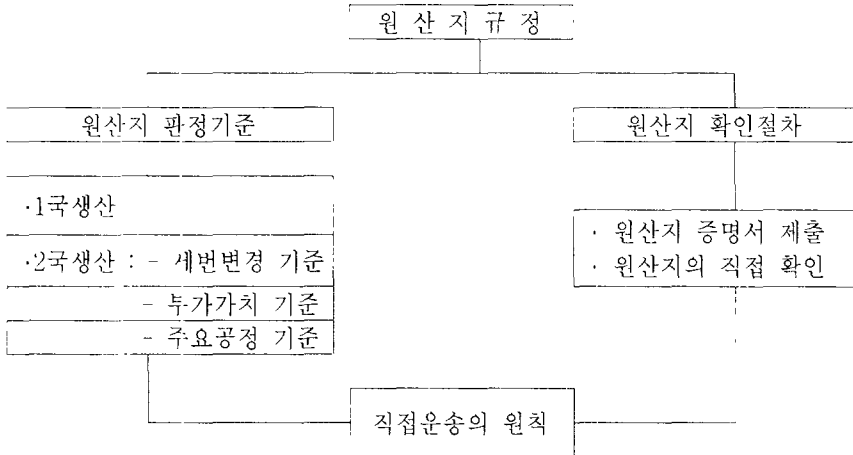
따라서 원산지의 확인절차는 원산지의 판정이 필요한 각종 무역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것은 그 절차의 엄격성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의는 원산지 요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⁰⁾

18) CCC(국제관세협력이사회)가 국제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국가 및 산업부군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품분류체계, 즉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표준국제무역분류, 1950),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 1977), TSUSA(Tariff Schedule of USA, 미국 관세율표), CTS(Canada Tariff Schedule, 캐나다 관세율표) 등 각국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적용하기 위하여, CCCN을 골격으로 한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하여 HS)를 만들었으며 1988년부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종수, 무역상무론, 삼영사, 1992, pp.271~275.

19) KOTRA,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해설, 1995. 3, p.64.

20) 한홍렬,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15.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구성〉



* 자료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WTO협정 해설, 1995, p. 148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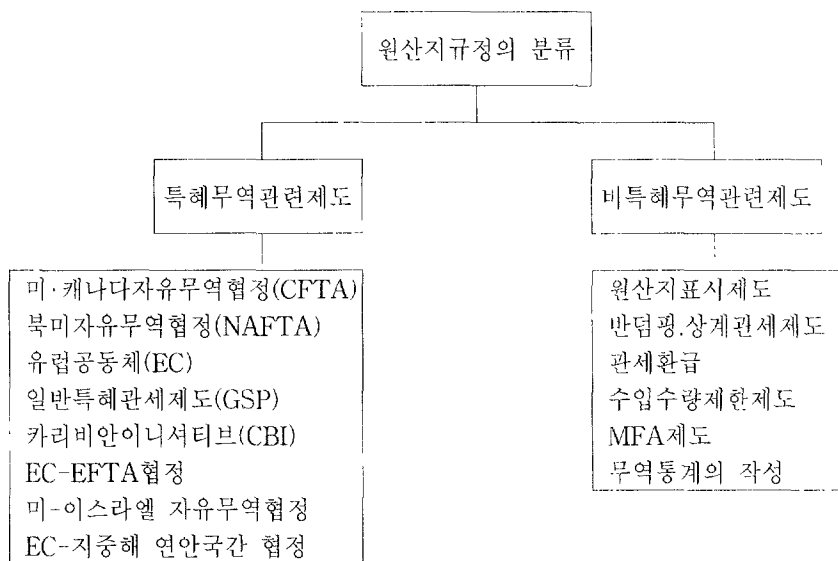
(2) 원산지규정의 종류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크게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된다.²¹⁾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다시 지역간 협정과 일방적 특혜조치의 운영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특정국가간의 지역간 협정(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간 무역상의 특혜를 베푸는 경우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미국의 카리브만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카리브만 부흥계획(Caribbean Basin Economy Recovery Act : CBERA), EC의 구식민지 지역(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 OCA)에 대한 특혜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 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21) KIEP,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1994. 7, pp.223~224.

〈원산지 규정의 분류〉



*자료 한홍렬, 원산지규정, 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6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조치의 시행상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선 수출자유규제, MFA(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수출규제 등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반덤핑, 셰이프가드 제도 등의 운영,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있다.

III.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GATT에서의 원산지규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은 4부 38개 본문 조항과 3개의 부속서와 양허표로 구성되어 관세인하,

무역장벽 철폐, 무역차별폐지를 목적으로 23개국이 체결하여 1948년 1월 1일 발족하였다.

GATT는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 인하와 세계교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GATT(1947)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것은 단지 원산지 표시(Marks of Origin)²²⁾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원산지 판정기준은 없다.

GATT(1947)의 조문별 내용을 보면 각 체약국은 상품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일방 체약국 영역의 상품에 대해 제3국의 동종상품에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으며²³⁾,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동법규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지 모를 곤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²⁴⁾

또한 체약국은 행정상 가능한 수입시 원산지 부착요구에 응하여야 하며²⁵⁾, 수입상품의 표시에 관한 체약국의 동산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관련 비용의 부당한 증가없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²⁶⁾

일반적으로 체약국은 정정의 표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허위의 표시가 붙여졌거나 또는 소정의 표시를 고의로 생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나 대하여 수입전에 특별세(Special duty) 또는 벌칙금(Penalty)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체약국은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the true origin of a product)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체약국이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지리적 상표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체약국이 자국에 통보된 상품의 명칭에 대하여 앞에서 규정된 합의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하는 요청 또는 주장에 충분하고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⁷⁾

22) GATT(1947), PART II, Art IX Marks of Origin.

23) op cit., Art IX 1

24) op. cit., Art IX 2

25) op cit., Art IX 3

19) op cit., Art IX 4

27) op. cit., Art IX 5

28) op cit., Art IX 6

위와 같이 GATT(1947) IX에서는 단지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원산지 문제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용문제 증가효과 등으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것은 방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원래의 원산지규정은 결여되어 있다.

2. UNCTAD에서의 원산지규정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는 1964년 12월 30일 제19차 UN 총회에서 UN의 상설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²⁹⁾

UNCTAD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경제발전과 특히 개발도상국 무역의 확대 및 이에 관련한 경제발전상의 제문제의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회 UNCTAD 총회에서 Prebish 사무국장은 「개발을 위한 새 무역정책」이란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도국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차별 특혜관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실시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공동결의안으로 제출되었다.

제2회 UNCTAD 총회에서 공동결의안이 구체화되어 특혜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1970년 10월 선진국측이 제출한 GSP실시 수정안에 합의하였다. 이 안에서 GSP 공여국의 원산지규정이 될수록 간단하고 동일화되도록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1976년 UNCTAD 제4차 회의에서 개도국의 공산품 수출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하나로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이 논의되어 구체적인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합의사항 중 원산지 규정은 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각국간에 조화를 시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개도국 전체를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규정했다.

29) 장병질, 관세법, 무역경영사, 1994. pp.85~92.

3. KYOTO(京都) 협약

국제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 CCC)는 1973년 5월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적 조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관세협력, 즉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을 승인하였다.³⁰⁾ 이 협약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특별한 원칙의 선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망라하고 있다.

(1)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D1)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에 대하여서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주요가공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의 특수한 경우로서 기계·기구 및 차량의 부속품, 예비부품·공구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 및 차량과 동시에 수입·판매될 때, 그 종류와 개수가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로 판정하고 조립부품 및 분해물품의 분할수입 경우에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는 단일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포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부속서에는 특수한 지리적 이유가 있거나 당해 물품이 타국에서 전시되거나 수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30) 관세청, 관세행정관련 국제협약, 1989년 9월, pp.177~204.

(2)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본 부속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이나 여타 절차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러 가지 원산지 관련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다.

(3) 원산지증명서 관리에 관한 부속서(D3)

본 부속서는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은 물품통관시 가능하나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점검이나 제시된 증명 및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의심스러운 경우 필요한 실제의 확인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행한 국가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때 확인요청을 받은 국가의 관세당국은 입장이 바뀌어졌을 경우 요청을 한 국가의 관세당국이 그러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회답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이다.

이와 같이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오늘날 원산지규정에 관한 최초의 규제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³¹⁾ 그러나 동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³²⁾는 20여개국에

31) 한국관세연구소, 관세(223호), 1990 2, p.72

32) D1-22개국, D2-21개국, E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의 기본 골격은 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0년 5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증명(D1 & D2)에 관한 부속서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수입질서 내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원산지규정이 개정 고시되었다.

관련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이 관세법(시행령 제53조 4항-원산지 증명서, 시행규칙 제31조-원산지 증명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규정되어 있다. 비특혜 원산지규정이 대외무역법(제31조 2항, 3항, 4항, 제68조, 제69조), 대

불과하며 미국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이 약하다.³³⁾

4.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배경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위한 교섭이 진전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다.

(1)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

각국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1) 각국 원산지규정의 부조화와 국제무역에 대한障害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각국 규정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무역장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없어 각국은 여러 가지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origin of country)를 판정한다 따라서 국가마다 원산지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여러 가지 장해(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표시 이업원가 등)가 발생한다.

2) 각국 원산지규정의 내용면의 문제점

각국의 원산지규정은 기준이 상호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역 관리규정(제3장 7절), 원산지 관리세칙(관세정고시 92-718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국가(지역) 수입제한제도규정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9조-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제35조 5항-심한 수입초과국으로부터 특정물품의 수입을 제한·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1조, 제23조-특정지역에서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산물의 수입금지), 식물방역법(제7조-특정지역에서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의 수입금지),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세칙의 적용을 받는 원산지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관세연구소, 원산지규정 및 적용사례, 협동문고, 1993, pp 22~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교역질서, 1994 7, pp 232~233.

33)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WTO협정해설, 1995. 1, p.148.

① 다수의 부품으로 조립되고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기계부품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없다(일본의 원산지규정).

② 특정산품의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Negative Rule이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를 부여하는 Positive Rule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EC의 복사기 원산지규정).

③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최종실질변경기준」은 없고, 「최종요공정기준」이 채택되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EC의 반도체 집적회로 원산지규정).

④ 소수의 특정제품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고 나머지 전부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이다(EC원산지규정).

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이 채용된 경우, 부가가치의 구성요소가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한국의 원산지규정).

⑥ 원산지결정기준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미국, 캐나다 원산지규정).

3) 각국 원산지규정의 제정과 운용의 문제점

각국의 원산지규정에는 제정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① 통상정책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예를 들면, 덤핑방지세의 적용범위를 일본산 제품으로부터 제3국 조립부품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이 세정되어 恣意的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EC의 복사기 원산지규정, 한국의 원산지규정).

② 산업정책수단으로서 또는 투자억제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이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

4)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각국 원산지규정은 이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과거 20년 동안의 급격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이것은 각국 원산지규정에 공통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① 국제분업과 투자교류의 진전에 따라 기계산품의 제조에는 복수국가가 관여하는 예가 적지 않지만 현행 원산지규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산품의 원산지를 명쾌히 확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산품의 무국적화라는 현상도 발생한다.

② 특정산품에 관한 원산지규정은 산품의 제조공정과 주요부품의 개발에 따

라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WTO의 원산지규정협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2) 과거의 조화교섭의 계승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과거의 원산지 조화교섭을 따라 수행되었다.

GATT 체결국은 1953년 10월 통일원산지규정의 채택을 촉구하는 국제상업 회의소(ICC)의 결의를 심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산지 정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찬성 11개국, 반대 8개국(영국, 호주 등), 수정제안국 9개국(일본, 미국, 프랑스 등)으로 결국 사장되었다.

1974년에 CCC가 채택한 원산지부속서도 원산지규정의 통일에 이르지 못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의 장단점을 열거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은 1950년대부터 단절되어 있던 원산지 조화교섭을 새로운 배경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WTO의 원산지규정

1. 구 성

원산지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 전문과 총 4부, 9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전문 : 체결국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

PART I : 정의 및 적용범위(DEFINITIONS AND COVERAGE)

Art 1 (원산지 규정)

PART II : 원산지 규정에 관한 규율(DISCIPLINES TO GOVERN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Art 2 (과도기간 중의 규율)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의 명확 적용

Art 3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

- 원산국의 개념
- 실시방법, 판정, 비밀정보 등

PART III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PROCEDURAL ARRANGEME

- NTS ON NOTIFICATION, REVIEW, CONSULTATION AND DISPU
- TE SETTLEMENT)

Art 4 (기구)

- ‘원산지규정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 연 1회 이상 회합
- CCC(국제관세협력이사회)산하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기술적 작업수행

Art 5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

- WTO발효 후 90일 이내 자국의 원산지규정 등을 WTO사무국에 제출 등

Art 6 (검토)

- 원산지 위원회의 검토 및 CCC 산하의 원산지규정 기술위원회와 협조

Art 7 (협의)

Art 8 (분쟁해결)

PART IV : 원산지규정의 조화(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Art 9 (목적 및 규정작성 원칙 등)

- 적용원칙이 객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여야 함.
- 일관성, 적극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함.
- 작업계획 (3년 이내 완료, WCO산하의 원산지규정 기술위원회에서 수행
- 기술위원회 작업계획 (완전획득, 실질적 변형, IIS 변경 등)

- 작업계획의 결과를 부속서에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설정
- 각료회의는 이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시간계획 설정

부속서 1 (Annex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의 임무 및 운영방법, 대표(1회원국 1명 이상의 대표 지정 가능), 회의(년1회 이상), CCC산하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 2 (Annex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Common Declaration), 즉 비특혜적 원산지 규정과 다른 특혜적 원산지규정에 대한 적용에 관한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협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원산지 규정이란 GATT(1994)의 최혜국대우(MFN)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관세상의 특혜조치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그리고 행정조 결정 등을 일컫는다.³⁴⁾

즉, 특혜무역을 제외한 여타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체결국(Contracting Parties)이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그 범위가 한정된다. 원산지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MFN원칙(GATT 제1, 2, 3, 11, 13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6조), 세이프가드(제19조), 원산지표시 요건(제9조),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관세 쿠퍼터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의 적용 그리고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의 작성이라 볼 수 있다.³⁵⁾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등 지역간 협정에 의한 특혜무역과 일반: 특혜관세제도 등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관세제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4)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 1.1

35) op cit., Art 1.2.

(2) 원산지규정의 적용상 지켜야 할 주요 원칙

1) 과도기간 중의 원칙³⁶⁾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을 위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원산지규정의 적용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체결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 충족요건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즉,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시 세번변경으로 인정되는 세번의 단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시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원산지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가공공정기준의 적용시 상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이 통상정책상의 조치나 수단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무역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원산지규정의 부당한 적용으로 무역을 제한, 왜곡 및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즉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원산지의 결정시에 전제조건으로서 제조 혹은 가공과는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제조 혹은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위해 포함될 수도 있다.

수출입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상품의 국내산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모든 체결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관되고 통일된 그리고 광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포지티브 기준(Positive Standard), 즉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며, 네거티브 기준(Negative Standard)은 포지티브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혹은 원산지 판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개별적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각 체결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 및 사법적, 행정적 결정은 GATT(1994) 제10조 제1항³⁷⁾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고, 수

36) op cit., Art 2 - Disciplin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출입자 또는 상당한 사유를 가진 제3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이 가능한 빨리 늦어도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원산지규정 그 자체를 포함하여 판정이 내려진 주변상황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여타 사법적 절차 등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위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

원산지규정의 개정 또는 신규 도입시에는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장치는 모든 사법, 중재, 행정재판 또는 절차를 통하여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정이 수정 또는 번복될 수도 있다.

아울러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 적용을 위해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는 관련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특별한 허락이 없을 경우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단, 사법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개가 요청될 수 있다.

2) 과도기 이후에 지켜져야 할 원칙³⁷⁾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본 작업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은 제2조의 과도기간 중에 지켜야 할 원칙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본 규정은 제1조의 적용범위에 제시된 바의 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원산지는 완전 생산공정이 행하여진 국가 또는 공정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최종적으로 발생시킨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에 부여하여야 하며, 수출입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제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여타 회원국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균일성, 불편부당함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법률, 규정 그리고 사법 및 행정적 결정은 GATT(1994)의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표해야 하며 수출입자

37)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체약국의 유효한 법규, 사법적 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서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에 관련되거나 관세율, 조세, 기타 과징금에 관련되거나 수출입제한금지, 상품의 판매, 수송, 보관, 가공, 혼합 등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타 국가 및 무역업자가 지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38) op. cit., Art 3 : Disciplines after the Transition Period.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제3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이 가능한 빨리, 늦어도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그 자체를 포함하여 위 판정이 내려진 주변 상황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여러 사법적 절차 등에 의하여 반복되지 않는 한 위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

원산지규정의 개정 또는 신규 도입시에는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는 모든 사법, 중재, 행정재판 또는 절차를 통하여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정이 수정 또는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 적용을 위해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는 관련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특별한 허락이 없을 경우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단, 사법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개가 요청될 수 있다.

(3)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협정

1) 기 구³⁹⁾

본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규정 위원회 :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본 협정의 운영과 목적에 관련한 각종 사항을 관장한다. 원산지규정 관련 기술위원회에 정보, 조언 및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GATT 사무국이 본 위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한다.

②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에 규정된 기술적 사업을 수행하며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협력한다. 기술위원회는 관세협력이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본 위원회의 사무국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2) 원산지 규정의 개정 및 원산지 규정의 신규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⁴⁰⁾

WTO 협정 발효(1995. 1. 1) 90일 이내에 현재 시행중인 원산지규정 및 관련 사법적 판정 및 행정명령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다시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하고 통일원산지규정의 작성기간까지의 과도기간 중⁴¹⁾에 원산지규정을 개정

39) op. cit., Art 4 : Institutions.

40) op. cit., Art 5 : Information and Procedures for Modific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Rules of Origin.

41) op. cit., Art 2.

(사소한 규정은 제외)하거나 상기 1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WTO 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규정을 신규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의 발효 60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4)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

1) 목적 및 원칙⁴²⁾

각료회의는 세계교역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관세협력이사회와의 협력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 즉 원산지규정은 본 협정의 제1조에 명시된 각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원산지는 특정 상품의 완전생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나, 공정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국가에 부여되어야 하고,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며 이해 및 예측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의 조치 및 수단에 부속되는 것이지만, 본 규정이 교역목적을 직·간접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및 교란하는 효과를 지녀서는 안되며,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불필요한 요건이나 제조공정과 무관한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균일성, 불편부당,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포지티브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네거티브 기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작업계획⁴³⁾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은 UR 종결 후 가능한 한 빨리 개시되어야 하며 개시 후 3년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즉 본 작업의 수행을 위한 기구는 원산지규정 위원회 및 원산지규정 관련 기술위원회이고, 국제관세협력이사회

42) op cit., Art 9.1 Objectives and Principles.

43) op cit., Art 9.2 Work Program

(CCC)의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다음의 작업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통일을 위한 작업계획을 시한에 맞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HS코드로 대표되는 상품분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본 작업은 요청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① 완전획득 및 최소가공 혹은 공정 :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취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품의 정의와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최소한의 공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② 실질적 변형 - 보완기준 : 기술위원회는 세번변경기준의 사용을 고려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본 작업은 품목별로 이루어질 것이며 매 분기마다 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되고 위원회의 요청 1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실질적 변형 - 세번변형 : 세번의 변경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판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 또는 예외적 기준으로서 부가기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후 2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원산지규정 위원회의 역할⁴⁴⁾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시한에 맞게 주기적으로 기술위원회의 해석과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작업의 개선 그리고 혹은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추가적 작업요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상기의 기술위원회 작업이 원결되면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결과의 일관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특혜무역 관련 원산지규정에 대한 공동성명⁴⁵⁾

부속서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안이 특혜무역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서 본 협

44) op. cit., Art 93

45) op. cit., ANNEX II · COMMON DECLARATION WITH REGARD TO PREFERENTIAL RULE OF ORIGIN

정에 마련되어 있는 원칙에 따르며⁴⁶⁾, 특히 원산지의 판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수 있다.⁴⁷⁾

3.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상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은 제품의 원산(country of origin), 즉 경제적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harmonization)하는 작업을 말한다. UR 후속 협상의 하나로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동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3년간(1998년 7월까지)협상을 추진하여 HS 5018개의 교역제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게 되며, 협상기간 동안 3단계로 작업일정을 구분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제1단계 작업일정은 수입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WTO와 WCO에서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1996년 2월 초 WTO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동 사항에 대한 협정문 초안의 기본틀이 확정되었다.

2단계 작업일정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원산지 결정방법(실질적 변형기준)을 정하는 협상이며, 지난 3월에는 농림축수산물, 신발 등 경공업제품 및 철강·금속제품의 원산지 결정방법이 검토되었고, 6월에는 섬유, 전기, 전자, 기계, 화학제품이 토의되었으며 9월에는 지난 3월, 6월 회의의 미합의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1997년에 수행될 제3단계 작업은 제2단계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에 적용할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과 같은 보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이 제정되면 HS 품목분류와 함께 통관분야의 기본규범이 되며, 반덤핑, 쿼터,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수출입통제작성 등 모든 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46) op. cit., ANNEX II.1.

47) op. cit., ANNEX II.3

V. 결 론

원산지규정 협정은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간 통합이나 일방적 관세특혜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타 일반적인 무역조치에 수반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에 마련된 공동성명을 통하여 특혜무역관계에 있어서도 본 협정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해 두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특혜무역과 관련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마련되는 각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서 세번변경을 재백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병료성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타 보완적인 기준의 작성시에도 자의성의 배제를 위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시 세번변경으로 인정되는 세번의 단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HS를 기준으로 원산지의 부여가 가능한 세번의 변경단위 즉 HS 4단위 또는 HS 6단위의 적용여부를 미리 규정함으로써 시행상의 자의성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시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원산지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시에는 각종 비용의 포함여부, 직접생산비의 정의 문제 그리고 생산자의 이윤 포함문제 등 매우 복잡한 개념들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공공정기준의 적용시 상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이른바 포지티브 기준으로서 단순히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제거를 의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교역목적의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추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만 본 규정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포함되게 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적용이 요구되는 무역관련장치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위 장치를 발동하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되는 상품에 국한하여 적용되지만 본 규정이 특정제품의 국내산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내국민 대우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업의 피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각종 무역관련 장치의 발동에 있어서 국내산 판정과 수출입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보호주의적 무역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경우 무역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WTO 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국제적인 통일원산지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 즉 각국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을 방지하고 국제교역환경 및 해외투자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협정상의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요 규정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특혜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원산지제정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국제무역·통관에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분야이고, 각국의 행정당국의 재량이 많아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원산지가 제품가격 및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이 기업의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반덤핑, 섬유쿼타, 원산지표시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규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의 국제화로 제3국 수출증대,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북분업에 의한 무역증대, 가시화된 APEC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다자간 무역의 확대에 의한 지적재산권,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원산지규정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그 동안 원산지분쟁이 많았던 섬유, 전기·전자, 기계분야에서는 통일원산지규정 협의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하며, 협상관련부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통상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參 考 文 獻]

- 이춘삼, 국제관세제도론, 동성사, 1993.
- 한홍렬,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대한무역진흥공사, EU의 일반특혜관세(GSP)해설, 1995.
- , EC의 원산지 규정해설, 1991.
- , UR 최종협정문, 1994.
- KIEP,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
- 한국관세연구소, 관세(223호), 1990. 2
- , 국제관세협약 현황, 1991.
- 관세청, 관세행정관련 국제협약, 1989.
-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WTO협상해설, 1995.
- 장병철, 관세법, 무역경영사, 1994
- 김세원, 국제경제질서, 무역경영사, 1994.
- 이병화, 원산지 표시제도의 집행사례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상공회의소, 관세법의 발전적 방향, 1994.
- , 대외무역법의 발전적 개편방향, 1994.
-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1991.
- 한국무역협회, NAFTA의 원산지규정 해설, 1994.
- 日本, 通商産業部, 「不公正貿易報告書, 1994年版」, 1994.
- , 「不公正貿易報告書, 1995年版」, 1995.
- Gray Cayde Hufbauer and Jeffery J. Schott, North American Free Trade : Issu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 Terence P. Stewart, The GATT Uruguay Round : a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 1,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
- Kent Albert Jones, *Export Restraint and the New Protectionism*,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DANIEL E. NOLLE,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 LUDGER SCHUKNECHT, *TRADE PROTEC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2.
- CHARLES F. DORAN AND GREGORY P. MARCHILDON, *The NAFTA Puzzle : Political Parties and Trade in North America*, Westview Press, 1994.
- Bernard Hoekman, "Rules of Origin for Goods and Services : Conceptual Issue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1993.
- Brendan Pearson,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Trade" presented to PECC Trade Policy Forum VII, Puerto Vallarta, Mexico, June 23~25, 1993.
- Edwin Vermulst and Paul Waer, "European Community Rules of Origin as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1989. *Journal of World Trade*, Vol. 24, June 1990.
- Magda, Kornis, "Rules of Origin in 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Int' l Economic Review*, July 1991.